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 05. 29 (목)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8. 06. 20(금)
- 다. 상정일자 : 2008. 06. 23(월) 제15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규의 명칭 등을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복지지원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진료비 감면기준을 정하기 위함임

나. 주요골자

1) 관련 법령 및 관계부처의 명칭 수정

-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안 제1조),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안 제3조, 제6조),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함(안 제4조)

2) 진료비 수수료 등의 비용 징수일을 “당월”에서 “당일”로 변경함
(안 제10조)

3) 제11조의 제목 “(검사수수료 감면)”을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로 변경하여 진료비 감면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4) 별표 3 “검사수수료 감면기준”을 별표 2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기준”으로 수정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하여 이를 “제1호 검사수수료 감면”으로 하고 “제2호 진료비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을 정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진)

가.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등의 개정에 따라 부처 및 명칭을 수정하고, 검사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기준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진료비, 수수료등 비용징수일을 현실에 맞게 “당월”에서 “당일”로 조정하고,
-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기준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 2007.12.21 조례 제1851호로 제정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 의료비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역보건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진료비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다. 결과적으로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근거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하고, 타조례의 지원규정에 의거 감면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 검토결과 적정하고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8.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규의 명칭 등을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복지지원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진료비 감면기준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및 관계부처의 명칭 수정

-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안 제1조),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안 제3조, 제6조),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함(안 제4조)

나. 진료비 수수료 등의 비용 징수일을 “당월”에서 “당일”로 변경함
(안 제10조)

다. 제11조의 제목 “(검사수수료 감면)”을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으로 변경하여 진료비 감면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라. 별표 3 “검사수수료 감면기준”을 별표 2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기준”으로 수정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하여 이를 “제1호 검사수수료 감면”으로 하고 “제2호 진료비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별첨

나. 개정 조례안 : 별첨

다.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라. 관계부서승인 : 해당 없음

마. 입법 예고 : 2008. 4. 18 ~ 5. 8 실시, 의견 없음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를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로 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제4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행정지도부 가격”을 “행정지도가격”으로 한다.

제6조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제8조중 “별표 1”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9조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제10조중 “당월”을 “당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검사수수료의 감면)”을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으로 하고, “별표 3”을 “별표 2”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며, “검사 수수료”를 “수수료 및 진료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보건소법 제6조</u>의 규정에 의거 -----.</p> <p>제3조(진료수가) 진료수는 <u>의료보험법에 의하여</u> 고시한 보건기관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p> <p>제4조(약가) ----- -----<u>보건사회부 행정지도부가격</u>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6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u>의료보험법</u> 등 -----.</p> <p>제8조(보증금 등)보건의료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u>별표1</u>”의 입원서약서를 -----.</p> <p>제9조(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①각 종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는 “<u>별표 2</u>”에 의거 징수한다.</p> <p>제10조(징수)①진료비, 수수료 등 비용은 <u>당월</u>에 징수하여야 한다.</p> <p>제11조(<u>검사수수료의 감면</u>)보건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u>별표3</u>에 의거 <u>검사수수료</u>를 감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u></p> <p>제1조(목적) ----- 「<u>지역보건법</u>」 <u>제14조의</u> 규정에 의거 -----.</p> <p>제3조(진료수가) ----- 「<u>국민건강보험법</u>」에 의하여 -----.</p> <p>제4조(약가) ----- ----- <u>보건복지가족부 행정지도가격</u>을 -----.</p> <p>제6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u>국민건강보험법</u> 등 -----.</p> <p>제8조(보증금 등)----- ----- “<u>별지 제1호 서식</u>”의 입원서약서를 -----.</p> <p>제9조(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①----- ----- “<u>별표 1</u>”에 -----.</p> <p>제10조(징수)①----- <u>당일</u>에 -----.</p> <p>제11조(<u>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u>) 보건의료원장은 ----- ----- <u>별표2</u>에 의거 <u>수수료 및 진료비</u>를 감면한다.</p>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4조 (수수료 등) 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2008.2.29>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군에서 직접 설치·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의료비 감면 및 무료건강검진